

■ 오피스텔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강화 (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에서 [별표3])

| 개 정   | 연 행 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5층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한 중요도 계수가 조정됨.</li> <li>15층 이상인 아파트 및 오피스텔 : 중요도 “특”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5층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별도로 언급되지 않으므로 중요도 “1”로 처리됨</li> <li>15층이상인 아파트 : 중요도 “특”</li> <li>5층이상인 오피스텔 : 중요도 “1”</li> </ul> |
| 기 대 효 과   | 15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 |

■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(건축법 시행 규칙 안 제12조제1항제4호)

| 개 정   | 연 행  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수선인 경우 신고대상인 경우에도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(안 제12조제1항제4호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 항목없음</li> </ul> |
| 기 대 효 과   | 구조안전확보 대상의 확대   |

■ ‘지하공동구 내진설계 기준’ 제정 (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, 동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제정됨. 2004. 6.)

| 제정 주요내용   | 연 행  |
|---|--|
| <p>제1장 총칙</p> <p>내진등급 및 내진성능목표와 설계거동한계 등을 제시하며 또한 용어 및 기호의 정리를 기술하였다.</p> <p>제2장 내진설계방법 및 지진응답해석법</p> <p>지하공동구의 내진설계절차에 따른 지반조사 및 지반분류 방법, 설계응답스펙트럼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각 내진성능수준에 대한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방법을 제시하였다. 또한, 박스형태에 대한 종방향 및 횡방향의 지진응답해석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조물의 단면력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</p> <p>제3장 액상화 평가 및 액상화 방지대책</p> <p>국내에 적합한 액상화 평가방법으로서 기준 안전율에 따라 액상화 간이평가 및 상세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액상화 발생시의 대책공법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.</p> <p>제4장 콘크리트박스의 상세설계</p> <p>제2장에서 결정된 단면력을 근거로 하여 콘크리트박스의 단면설계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철근배근 설계방법 및 기타 상세설계방법을 제시하였다.</p> <p>* 관리주체 : 사단법인 한국지진공학회(02-886-2838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없음</li> </ul>             |
| 기 대 효 과   | 지하공동구의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지하공동구가 입는 지진피해의 정도를 최소화시키고 지하공동구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함 |

■ ‘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’ 개정안(2004. 7.)

| 개정 주요내용   | 비 고 |
|---|-----|
| <p>주요내용</p> <p>1. 목구조 건축자재 생산기술의 발달 및 건축공법의 발전을 반영하여 주요구조부(바다·지붕 및 계단을 제외함)가 목구조인</p> |     |

■ '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' 개정안(2004. 7.)

| 개정 주요내용  |   | 비 고 |
|--|---|-----|
| <p>건축물의 규모제한을 상향(지붕높이 13미터→18미터이하, 처마높이 9미터→15미터이하) 조정하고, <b>비보강조적조 건축물의 규모(지붕높이 15미터이하, 처마높이 11미터이하)를 제한함</b>(안 제20조제1항, 제2항)</p> <p>2. “소규모건축물”에 해당하는 목구조·조적식구조·블록구조·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, “건축구조설계기준”에 의하여 설계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)</p> <p>3. 목구조의 건축물이나 목구조와 조적식구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로서 “소규모건축물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목구조로 된 부분에 대한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, 가새, 바닥틀 및 지붕틀, 방부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23조 내지 제27조)</p> <p>4. 벽돌구조·돌구조·콘크리트블록구조 등 조적식구조의 건축물이나 이와 목구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로서 “소규모건축물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대한 기초, 내력벽, 간막이벽, 테두리보, 개구부, 담 등에 대해 규정함(안 제28조 내지 제40조)</p> <p>5.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로서 “소규모건축물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대한 기초, 내력벽, 테두리보, 담의 구조 등에 대해 규정함(안 제41조 내지 제46조)</p> <p>6.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조적식구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로서 “소규모건축물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의 배합·양생, 거푸집, 피복두께, 보·슬라브의 구조 등에 대해 규정함(안 제47조 내지 제55조)</p> |   |     |
| 기<br>대<br>요<br>구   |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구조·설계기준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함 |     |

■ '공항시 내진설계기준' 제정 (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동시행령 제55조,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. 2004.6.)

| 개정 주요내용  |  | 연행   |
|--|--|------|
| <p>주요내용</p> <p><b>제1장 : 총칙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목적, 적용범위, 용어, 준거시방서와 표준서</li> </ul> <p><b>제2장 : 지진하중 및 성능수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진하중과 지진재해도는 내진설계기준연구Ⅱ를 따른다</li> <li>· 재현주기에 따른 지반운동 수준(6단계), 설계지반운동 크기(평균재현주기 500년을 사용), 지반의 분류, 설계지반운동 정의 등</li> </ul> <p><b>제3장 : 비행장시설의 내진설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등급별 설계지진에 대하여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</li> <li>· 등급 분류 : 특등급(활주로), 1등급(유도로, 계류장)</li> </ul> <p><b>제4장 : 건축물의 내진설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건축물에 대한 다단계 설계기준이 적용될 때까지 내진등급 분류를 제외하고 건축물 하중기준 및 해설에 규정된 기준을 따른다.</li> <li>· 등급 분류 : 특등급(여객터미널, 관제탑, 구조 및 소방시설), 1등급(화물터미널, 동력동, 항공기정비고, 관리동 등), 2등급(화물창고, 경비시설 등)</li> </ul> |  | · 없음 |
| 기<br>대<br>요<br>구   |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동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,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함 |      |